

Monthly Legal Update - 2022. 12.

DR & AJU LLC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건설 · 부동산

최신 판례

2022도148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대법원 선고일자:2022.12.29.)

◆ 사안의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 (제138조 제3호,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이 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홍보, 총회안건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위반(제138조 제3호, 제4호)으로 기소된 사안

◆ 쟁점: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 (2) 정기총회 홍보 및 총회 안건과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모두 유죄, 원심: 모두 항소 기각

입법 (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FA%B1%B0%ED%99%98%FA%B2%BD%F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 관련판례

2019도187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판시사항: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 판결요지: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주요 이슈

[아시아경제]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권 논란...법원 판결 엇갈려
[세계일보]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형 가능해진다

금융

최신 판례

2018두67 손실보상금
(대법원 선고일자:2022.11.24.)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단계에서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해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함. 상고심에서 피고는 처음으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 쟁점: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원고: 일부 승, 증액되어야 하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함

입법 (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FC%9F%90%EB%B3%B8%FC%88%9C%FC%9F%A5%FA%B3%BC%FA%B8%88%FC%9C%B5%ED%B8%AC%FC%9F%90%FC%97%85%FC%97%90%F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관련판례

2016도141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기」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 이슈

[법조신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
[이코노미스트] "한 푼이 아쉬운데 보상금 받는데 4개월" 토지주들 '부글부글'
[조선비즈] 정부, 25년 만에 M&A 의무공개매수제도 제도입한다...내년 초 입법 착수

형사송무

ESG

최신 판례

최신 판례

2021도156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2022.12.15.)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12.15.)

-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자체가 아닌,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것에 대하여 아동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 ◆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 ◆ 사안의 개요: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레미콘차량(수급인 소유)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피고가 레미콘운반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수급인의 배출을 이유로 도급인인 원고에게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피고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1심: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원상: 무죄

- ◆ 쟁점: (1) 수급인의 직원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 사건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고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여부 (2) 제3자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2. 53)의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1심: 원고 패, 원상: 원고 승

입법(안)

입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니프타(납사)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https://www.law.go.kr/%EB%B2%95%EB%A0%B9/%F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F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관련판례

◆ 관련판례

2015노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9구합545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시사항: 페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녀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별표 4의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및 [별표 5의 3], [별표 5의 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요 이슈

주요 이슈

[중앙일보] 친구들 앞에 세워 망신 준 조종교사, 정서적 학대일까...법원 판단은 [YTN] '어린 조폭' 등장, 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법과 제도

[아시아경제] 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규제 합리화 시급 [동아일보] [단독]또 그놈...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한국경제] ESG 채권 금융상품 '흔들'...각국 정부 규제는 늘었다

가사

기업송무(국방)

최신 판례

최신 판례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2.12.01.)

2019도5925 병역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2.12.01.)

-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작은아버지 가족인 피고들을 상대로 고모할머니(망인)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적법·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자, 피고들이 위 유언장은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의 사전 처분(임시후견인 선임)이 내려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투는 사안
◆ 쟁점: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민법 제1063조의 준용 여부)

-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체류하면서 18세가 되어 당시 시행 중이던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최종 국외여행 허가기간(2002. 12. 31.)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냄. 피고인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인 2017. 4. 18. 귀국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1심: 원고 패 원고: 원고 승

- ◆ 쟁점: (1)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가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즉시범인지 여부와 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하급심의 판단이 통일적이지 않음) (2) 위 범죄를 즉시범으로 보아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으로 보아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심: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원심: (직권파기) 면소(공소시효 완성)

입법(안)

입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하는 시설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https://www.law.go.kr/%EB%B2%95%EB%A0%B9%F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19068,20221213)

◆ 관련판례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판사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연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원심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요 이슈

- [YTN] 내 마지막 '부탁', 유언...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한국일보]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개편... '노인범죄 스토킹' 수사도 한다 [SBS] 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피의자 절반기각 기소

[병역법]

병역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 관련판례

2007도9952 병역법 위반

- 판사사항:

- [1] 병역의무자의 도망 등에 관한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청장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 [조선일보] '뇌전중' 허위로 꾸며... 병역 기피 도운 브로커 추가 구속 [동아일보] "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호소[법조 Zoom In]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BD 총괄

건설·부동산

금융

형사송무

ESG



차 동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전 재 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김 인 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현 용 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55
E : yshyun@draju.com



이 상 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가사

국방



정 성 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10
E : stjeong@draju.com



윤 대 해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3
E : dhyoon@draju.com